

아주대학교 2021-2학기부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

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

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
(교육부고시 제2021-19호, 2021.7.6 시행)

표준현장실습 운영 기준

실습시간 및 실습지원비

- ▷ **실습시간**: 실습기관의 근무제(주5일제, 일8시간 등)에 따라 월단위로 실습운영/실습시간의 10~25% 교육 실시
- ▷ **실습지원비**: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(최저임금 75% 이상)/학생에게 월단위로 직접 지급

학생안전망 강화

- ▷ 학생 대상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
- ▷ 학생 대상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
- ▷ 휴일사용 관련
 - 1개월 실습 시 1일의 휴일 발생
 - 휴일(공휴일 포함)은 출석일수에는 미포함되나 유급휴일로 인정(실습비 지원)

재택실습 관련

- ▷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한 경우만 예외적 인정
- ▷ 실습기간의 1/4 범위 내에서만 허용
- ▷ 과제 부여 및 피드백 등 정상적인 실습관리가 이루어져야 함

표준화된 실습관리

- ▷ 표준서식 사용
 - 운영계획서, 협약서, 출석/평가표
- ▷ 신규기업의 경우 사전점검표 제출
- ▷ 실습기간 중 중간점검 실시
 - 실습기관 현장방문 / 학생대상 중간점검

기업의 주요 준수사항

- * 학생 선발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 진행 (학생 개인섭외, 조기취업 등을 통한 실습 불가)
(기업) 학교에 참여신청서 제출 → (학교) 학생 모집 → (기업) 학생 선발
- * 학생 산재보험 가입 (실습시작 15일 이내 가입 후 확인서 학교 제출)
- *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75% 이상 지급 (2021년 기준 월 1,366,860원 이상)
- * 실습지원비는 업무시간과 교육시간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(교육시간) 실습시간의 10~25% 범위에서 운영
(예시) 업무시간 90% 교육시간 10%일 경우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90% 이상
업무시간 75% 교육시간 25%일 경우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% 이상
- * 학생 지도인력 배치 필수, 출석/평가표 작성 등 학생 지도 및 실습관리

(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실습기관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)

